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FTA의 영향과 법적 대응방향

김 두 진*

차 례

- I. 서 언
- II. 양 FTA 협정상 금융서비스 개방의 주요 내용
 - 1. 금융서비스 개방의 범위
 - 2.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 3. 금융기관의 시장접근의 보장
 - 4.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자국민 선임 강요의 금지
 - 5. 금융당국의 안정성 및 건전성 조치의 허용
- III.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 1. 주체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 2. 수단·방식면: 전자적 방식의 동원과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지시
 - 3. 객체면: 금융 및 보험서비스
- IV. 전자금융거래에 미치는 양 FTA 협정의 영향
 - 1. 신금융서비스의 제한적 허용
 - 2.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의 허용
 - 3.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처리 등의 허용
 - 4.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V. 양 FTA의 영향에 대한 법적 대응방향

*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I. 서 언

근래 전세계적으로 지역경제블록화가 진행중이며,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은 근래에 다자간 무역시스템에 있어서 매우 현저한 특성으로 대두되고 있다. 2010년 7월 31일 현재 474개의 RTAs가 GATT/ WTO에 통지되었고,²⁾ 283개의 협정이 발효중이다. RTAs 가운데 대표적인 형태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FTAs)인데,³⁾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06년 3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 동년 9월 발효된 한·유럽자유무역지역(EFTA) FTA, 2007년 6월부터 일부 발효되기 시작한⁴⁾ 한·ASEAN FTA,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과의 FTA 협상이 2007년 6월에, EU와의 FTA 협상이 2010년 10월에 각각 타결되어 서명되었고, 한·페루 FTA는 2010.11.5.에 가서명되었다.⁵⁾

이 가운데 2007년 4월에 양국 협상단 간에 처음 타결된 후 2010년 11월 30일부터 양국 통상장관간 추가협상을 거쳐 12월 3일에 협정문이 일부 개정된⁶⁾ 한·미 FTA 협정은 미국이 안보측면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라는 정치적 의미외에 인구수, 1인당 국민소득, 소비지출 등에서 세계1위의 내수시장을 가진 국가인 점에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매우

2) WTO에 따르면, 이 중 351개의 RTAs는 Article XXIV of the GATT 1947 or GATT 1994에 따라 통지된 것이고, 31개는 위임조항에 의하여 통지된 것이고, 92개는 Article V of the GATS에 따라 통지된 것이다.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 (Lastly visited on Nov. 30, 2010).

3) 이들 RTAs 중에서 FTA 또는 부분적인 자유무역협정이 전체의 90% 이상이고, 관세동맹은 10% 미만이다. Id.

4) 상품부문은 2007.6.1. 발효, 서비스부문은 2009.5.1. 발효, 투자부문은 2009.9.1. 발효되었다.

5)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http://www.fta.go.kr/user/index.asp> (2010.11.30. 마지막 방문). 그밖에 우리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과 FTA 협상중이며, 일본, 중국, MERCOSUR, 러시아, 이스라엘, SACU, 베트남, 중미 등과의 FTA를 공동연구 또는 여건조성 중이다.

6) 주요내용은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기간을 2년 연장하고,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고, 승용차의 관세철폐 일정을 발효후 4년으로 늦추고, 자동차분야의 세이프가드를 상호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 등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 결과 상세 설명자료 (2010.12.5).

크며,⁷⁾ 한·EU FTA 협정도 EU가 그 인구와 국내총생산, 판도 등이 미국보다 크고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출 및 무역흑자 대상지역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직접 투자지역인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글에서는 양 FTA 협정을 중심으로 FTA가 전자금융거래에 대하여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보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향에 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⁸⁾

II. 양 FTA 협정상 금융서비스 개방의 주요 내용

1. 금융서비스 개방의 범위

한·미 FTA 협정 제13장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의 규정들은 우리나라나 미국이 채택한 상대국의 금융기관, 상대국 투자자, 자국의 영토내의 금융기관에의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 및 국경간금융서비스거래에 관련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⁹⁾ 한·EU FTA 협정 제7장은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EU FTA의 금융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은 통신서비스 국경간 공급 관련 방송사간 방송 신호 전송, 환경서비스 관련 생활하수처리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한·미 FTA의 그것과 유사하다. 다만 한·미 FTA의 예시방식(negative system)과 달리 한·EU FTA에서는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열거방식(posi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¹⁰⁾

7) 그러나 한·미 FTA 협정에 대하여 양국 의회의 비준이 되지 않아서 발효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던 차에 2010년 10월 한·EU FTA가 양국 협상단간에 정식서명되어 2011년 7월부터 잠정발효될 예정이다(정식 발효되기 위하여서는 EU 27개 회원국의 개별 비준절차가 필요한데, 그 완료까지 2,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한·미 FTA 협정의 개정논의 및 의회승인 추진은 이것으로부터 일정한 자극을 받은 결과라고 짐작한다.

8) 예컨대 한·칠레 FTA(2004.4.1. 발효)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장[제10장(투자), 제11장(서비스무역), 제13장(기업인의 일시입국) 등]은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한-ASEAN FTA(2007.6.1. 발효)는 상품무역협정으로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9) 한·미 FTA 협정문 제13.1조(적용범위).

10) 예컨대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7-가-1는 허용되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범위를

2.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한·미 FTA 협정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은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자국의 영역내의 금융기관¹¹⁾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수행·운영 및 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¹²⁾ 각 당사국은 상대국의 금융기관에게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금융기관 및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수행·운영 및 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의 유사한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¹³⁾ 한·EU FTA 협정에서는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에 관한 조항에서 개방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부속서 7-가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설립과 투자자에게 자신의 동종 설립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하여 유사한 내용을 선언하고 있다.¹⁴⁾

또한 한·미 FTA 협정은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를 규정하여, 한국과 미국이 각각 상대국의 투자자·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 상대국의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

열거하고 있다.

11) 한·미 FTA 협정상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이라 함은 그것이 소재한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모든 금융 중개업자(financial intermediary) 또는 그밖의 기업을 말하며, ‘상대국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상대국의 인에 의하여 통제되는 당사국의 영역내에 위치한 지점을 포함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또한 ‘금융서비스 공급자’(financial service supplier)는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한·미 FTA 협정문 제13.20조(정의). 한·EU FTA 협정에서는 금융기관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융서비스 공급자 개념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EU FTA 협정문 제7.37조(적용범위 및 정의).

12) 한·미 FTA 협정문 제13.2조 제1항.

13) 한·미 FTA 협정문 제13.2조 제2항.

14) 한·EU FTA 협정문 제7.12조(내국민대우).

비당사국의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¹⁵⁾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왕에 타결한 FTA들 가운데 금융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한-싱가포르 FTA(2006.3.2. 발효), 한-EFTA FTA(2006.9.1. 발효)에서 싱가포르나 EFTA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미국에 부여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한·EU FTA에서는 최혜국대우와 관련하여 향후 체결되는 제3국과의 RTA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약속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와 EU가 상호 그와 동등한 개방 혜택을 부여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한·미 FTA를 포함하여 한·EU FTA의 발효전에 서명된 RTA의 혜택이 자동적으로 상호 부여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¹⁶⁾

3. 금융기관의 시장접근의 보장

한·미 FTA 협정은 한미 양국은 상대국의 금융기관 또는 그러한 금융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는 상대국의 투자자의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i)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 심사의 요건 중 어느 형식에 의한 것이든 금융기관의 수에 대한 제한, (ii)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식에 의한 금융서비스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iii)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식에 의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산출량에 대한 제한 또는 (iv)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로, 특정 금융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금융기관이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에 대한 제한 또는 (v)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의 특정한 형식으로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¹⁷⁾

15) 한·미 FTA 협정문 제13.3조.

16) 한·EU FTA 협정문 제7.8조(최혜국대우).

17) 한·미 FTA 협정문 제13.4조.

한·EU FTA는 위의 (i) 내지 (iii)에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¹⁸⁾,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자의 조치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¹⁹⁾ 그 부분에서는 제한여지를 남기고 있다. 위의 (iv)의 내용에 관해서는, 설립을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협정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되는 조치의 하나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투자자가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로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²⁰⁾ 결과적으로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다.

4.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자국민 선임 강요의 금지

한·미 FTA 협정은 제13.8조에서 한미 양국이 상대국의 금융기관에게 특정 국적의 개인을 그 고위 경영자나 그 밖의 주요 직위에 선임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과 상대국의 금융기관의 이사회 구성원을 자국 국민, 자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인 또는 그 조합으로 구성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보없이 이 내용을 수용한 우리와 달리 미국은 제13.9조의 불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의 규정을 근거로 부속서 III Section A에서 제13.8조에 대한 유보사항으로서 전국은행의 모든 이사는, 통화감독청(Comptroller of the Currency)이 이사 중 반수 이하에 대하여 국적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미국시민이어야 한다는 12 U.S.C. 72의 연방정부 수준의 기존 조치²¹⁾에 대하여 유보하고, 미국의 전체 주 및 컬럼비아 특별주, 푸에르토리코 준주의 모든 기존의 불합치조치들을 내국민대우(제13.2조)·최혜국대우(제13.3조)·금융기관의 시장접근(제13.4조)과 함께 제13.8조에 대한 유보사항으로서 명시하고 있다.

18) 한·EU FTA 협정문 제7.5조(시장접근).

19) 한·EU FTA 협정문 제7장 각주7.

20) 한·EU FTA 협정문 제7.11조(시장접근) 2(마)목.

21) 조치(measure)라 함은 법, 하위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들이다. 조치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i) 이 협정의 발효일 현재 개정되거나 지속되고 있는 조치를 말하며, (ii) 그 조치와 부합되는 권한하에서 채택되거나 유지되고 있는 하부조치를 포함한다. 한·미 FTA 부속서 III 제A조 Introductory Note.

5. 금융당국의 안정성 및 건전성 조치의 허용

한·미 FTA 협정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통화·환율·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과 같이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는 조치는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제13장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조치는 그 규정에 의한 그 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위장 또는 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²²⁾ 또한 이 장에 통합된 제11.7조(송금) 및 제12.10조(지급 및 송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가 자사의 계열기업 또는 관련된 인을 상대로 하거나 혹은 그 이익을 위한 송금을,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공급자의 안전(safety), 건전성(soundness), 완전성(integrity) 또는 금융책임(financial responsibility)의 유지와 관련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²³⁾

한·EU FTA 협정은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건전성 사유(prudential reasons)로 (a)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b) 그 당사국의 금융제도의 완전성(integrity) 및 안정성(stability)의 보장 등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건전성 조치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고, 이 조치가 협정의 다른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규정에 따른 각 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보충성 및 탈법행위 금지를 확인하고 있다.²⁴⁾

또한 한·EU FTA 협정의 각 당사국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효과적인 은행 감독을 위한 핵심 준칙(the Core Principle for Effective Banking*

22) 한·미 FTA 협정문 제13.10조 (1)항.

23) 한·미 FTA 협정문 제13.10조 (3)항.

24) 한·EU FTA 협정문 제7.38조(건전성 조치 예외) 2목.

Supervision of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03년 10월 3일 싱가포르에서 승인된 국제보험감독관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 Insurance Supervisors)의 보험감독 핵심 원칙 및 방법론(the Insurance Core Principles and Methodology)” 등 “금융서비스 분야의 규제 및 감독과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이 자신의 영역 내에서 이행되고 적용되도록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므로²⁵⁾ 금융전전성에 관한 국제기준은 각 당사국에서 협정에 불구하고 관철됨을 확인하고 있다.

Ⅲ.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이른바 광의의 전자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인데, 이에선 전자지급거래·전자증권거래·전자보험거래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금융거래가 속한다. 이와 달리 협의의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지급거래, 즉 전자적 지급수단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시키는 거래인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EFT)·전자화폐지급(electronic money payment)·선불전자지급(electronic pre-paid payment)·인터넷 신용카드지급·모바일지급·구매카드지급²⁶⁾·결제대금예치(escrow)제의 이용에 의한 자금결제 등만을 의미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제2조제1호)라고 정의하고, ‘전자지급거래’를 자금을 주는 자(지급인)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수취인)에게 자

25) 한·EU FTA 협정문 제7.24조(거버넌스).

26) 기업간 거래에서 물품의 구매나 판매시에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서 거래은행과 카드 발행계약을 한 구매기업이나 판매기업이 구매대금 결제나 판매대금 수금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신용카드거래와 유사한 거래구조를 취한다.

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제2조제2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거래의 정의는 광의의 전자금융거래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²⁷⁾ 이와 달리 최광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파악하여 전자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업무와 관련한 내부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금융상품판매, 금융서비스 채널의 제공, 지급결제 등 금융영업 및 이에 부수한 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 즉 금융기관 업무의 전산화를 전자금융거래로 파악하는 입장²⁸⁾도 있으나 금융기관의 업무의 전산화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²⁹⁾

금융거래 가운데 전자적 수단과의 친화성이 가장 큰 것은 은행거래를 포함한 지급거래로 생각되고, 증권거래도 인터넷 증권거래와 주식 등의 전자등록 양자 모두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된다. 반면 보험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의 특성상 전자거래의 대상으로 되기에 불편한 점³⁰⁾이 있어서 보험계약 자체보다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자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보험거래에 대한 보험요율의 인하가 확대되면 인터넷 보험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³¹⁾

27)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제2판, 법문사, 2008, 7쪽.

28)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총람,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2004.3, 3쪽, 정경영, 전자금융 거래와 법, 박영사, 2007, 10쪽 주14.

29) 정경영, 위의 책, 11쪽(다만 이 입장은 이러한 정의를 광의의 전자금융거래로 명명하고, 협의의 전자금융거래를 위의 광의의 전자금융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명하고 있다.).

30) 손진화, 위의 책, 19쪽(상대적으로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전문가인 보험설계사 등의 설명이나 도움이 필요”한 점, 거래의 빈도면에서도 은행 거래나 증권거래와 달리 “보험계약은 1회성을 띠는 경우가 보통”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31) 손진화, 위의 책, 같은 쪽.

1. 주체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의 ‘주체’의 측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보험사업자,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전문금융회사, 우체국예금·보험을 취급하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이고, ‘전자금융업자’는 이 법 제28조에 의하여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를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그 밖에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로 규정되고 있다.

2. 수단·방식면: 전자적 방식의 동원과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지시

전자금융거래의 ‘수단·방식’ 측면에서는 오프라인거래에서와 같은 거래당사자간 대면접촉 대신에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라는 ‘전자적 방식’이 동원된다는 특성이 있다. ‘전자적 장치’는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간의 계약은 통상 서면에 의하여 미리 거래준비단계에서 미리 체결되고 개개의 거래는 이용자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지시”로 이해할 수 있다.³²⁾ ‘거래지시’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제17호). 거래지시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³³⁾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고(같은 법 제2조제1호), ‘정보처리시스템’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동조 제2호). 전자문서의 개념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저장되고 정보처리시스템이 연결된 유무선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되는 정보로 파악하고 플로피디스크나 CD-Rom에 정보를 담아 주주에게 발송하는 것이나 전화에 의한 통지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³⁴⁾가 있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의 개념이 네트워크를 전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신망과 연결된 전자매체만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³⁵⁾ 후자는 전자문서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에 의한 전자적 정보로 보고 전자금융거래에서의 그러한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지시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서 플로피디스크나 CD-Rom은 양 능력을 모두 갖는 점에서 전자문서에 포함되거나 전화, 전신, 텔렉스 등 기존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정보전달 능력만 있지 정보처리능력을 갖는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전자문서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견해³⁶⁾도 있다. 전자문서를 사용하여 거래지시를 하는 개개의 전자금융거래가 주로 격지자간의 거래에 있어 사용되고 있는 현실, 다른 경우보다 그러한 경우에 전자거래의 효용가치가

32) 정경영, 앞의 책, 21쪽

33) 손진화, 앞의 책, 35쪽.

34) 정대익, “전자공시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22권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3, 246쪽.

35) 정경영, 위의 책, 21면.

36) 정경영, 위의 책, 같은 쪽; 권재열, “주주총회의 전자화”, 『비교사법』 제10권 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 271쪽.

높다는 점, 그리고 「전자거래기본법」이 전자적 장치로 예시하고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 법 제2조제8호)이 (비록 금융기관의 점포에 위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통신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전자의 견해가 그렇게 주장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상으로는 전자문서의 개념이 당연히 통신망과의 연결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자의 입장은 이를 너무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후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자의 입장보다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이용되는 전자적 장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장치의 범위에 있어서는 이를 너무 좁게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음성정보 전달에 그쳤던 종래의 전화기의 기능이 폰뱅킹에 사용되는 것처럼 기기 자체의 기술개발이나 다른 장치나 사람과의 연결에 의한 기능확대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적 장치의 예로 전화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도 전자적 장치에 포함시킴으로서 기술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사용될 장치에 대하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점(이 법 제2조제8호) 등을 감안하면 전자문서를 전달하는 전자적 장치에 대해서는 플로피디스크나 CD-Rom은 물론 전화기, 텔렉스, 팩스 등까지 포함되도록 넓게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전자금융거래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라고 할 때 자동화된 방식은 거래의 준비단계에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지만 거래의 본단계인 개시·처리·종결단계에서는 반드시 전자금융업무의 이용에 있어 채택되어야 한다. 자동화된 방식은 같은 조건의 고객 모두가 인정된 접근매체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를 통하여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한 후 거래지시를 처리하고 지급과 이행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객체면: 금융 및 보험서비스

전자금융거래의 ‘객체’ 측면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문제되는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이 법 제2조제3호).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제2조제2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법」은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어서(제46조 제8호) 상법상 금융거래는 수신·여신·환 업무를 통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유통을 매개하는 은행거래를 의미하며 보험, 금융리스, 신탁, 상호부금·신용카드·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 등은 금융거래와 구별하여 규정되고 있다(제46조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9호, 제21호, 제22호).³⁷⁾ 그러나 한·미 FTA 협정 및 한·EU FTA 협정에서는 금융서비스에 보험, 금융리스 등을 포함시키는 일반적인 용례에 따르고 있다.

IV. 전자금융거래에 미치는 양 FTA 협정의 영향

한·미 FTA협정과 한·EU FTA협정은 그 내용으로서 신금융서비스의 허용,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허용,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의 개방,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짐작되므로 한·미

37) 손진화, 상법강의 제2판, 신조사, 2010, 138-141쪽; 정경영, 앞의 책, 7쪽; 정찬형, 제13판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0, 60-64쪽; 최준선, 제6판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0, 93-98쪽.

FTA 협정 및 한·EU FTA협정이 전자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들 사항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신금융서비스의 제한적 허용

신금융서비스(new financial service)는 협정의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지 아니하나,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는 공급되는 금융적 성격을 가지는 서비스를 말하는데,³⁸⁾ 새로 생성된 전자금융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금융서비스에 해당할 수가 있다. 한·미 FTA 협정과 한·EU FTA 협정에서 각 당사국은 상대국의 금융기관에 의한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자국의 금융기관에게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입법조치 없이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합의하였다.³⁹⁾

한·미 FTA 협정문 제13.4(b)조는 협정 당사국은 상대국의 금융기관 또는 그러한 금융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는 상대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존재 또는 합작투자의 특정한 형식에 대한 제한이나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협정문 제13.6조 제2문에서는 이 제13.4(b)조는 신금융서비스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또한 협정문 제13.6조에 대하여 “당사국은 제13.6조의 규정이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상대국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외에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승인하도록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한 신청은 그 신청이 제출된 당사국의 법률이 적용되며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3.6조의 의무에 종속되지 아니한다.”는 각주가 삽입되었다.

한·미 FTA 협정에서는 당사국은 상대국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되는 제도적 및 법적 형식을 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⁴⁰⁾ 신

38) 한·미 FTA 협정문 제13.20조; 한·EU FTA 협정문 제7.37조.

39) 한·미 FTA 협정문 제13.6조 제1문; 한·EU FTA 협정문 제7.42조.

40) 한·미 FTA 협정문 제13.6조 제2문.

금융서비스는 우리나라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다. 예컨대 관련법에서 국경간 거래를 통한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허용할 수도 있고 그와 달리 국경간신금융서비스공급은 불허하고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국내 금융감독당국이 신금융서비스의 개개 상품별로 심사하여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다. 협정문에서는 일방 당사국이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허가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허가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허가는 건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⁴¹⁾ 일반적으로 신금융서비스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접한 경험이 없는 새로운 것이므로 국내 상업적 주재(commercial nexus), 즉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지점 등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금융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관련금융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고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이면서 금융규제당국의 허가를 받는 것에 한하여 허용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보험업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우리나라 관련법률에서 당해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 및 절차, 요건 등을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⁴²⁾

외국에서 개발된 금융서비스가 국내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신금융서비스의 허가와 관련된 국내법 및 규제체계에 달려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⁴³⁾ 금융규제당국은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국내의 잠재적 수요, 경쟁대상인 유사 금융서비스에 대한 국내법 및 규제체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신금융서비스별로 허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

41) 한·미 FTA 협정문 제13.6조 제3문.

42) 동지, 심영, “미국 FTA 금융서비스 분야 경향과 우리의 대응”, 「국제거래법연구」 제 15집 제2호, 한국국제거래법학회, 2006, 69쪽.

43) 김자봉·하준경·이석호·구정환,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한국금융연구원, 2007.2, 8쪽.

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종래의 상품별·기관별 규제로부터 기능별규제(functional regulation)로⁴⁴⁾,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하고 있는데,⁴⁵⁾ 금융투자상품·서비스의 포괄주의로의 전환은 관련법에서 신금융서비스 가운데 시판·제공이 금지되는 금융상품·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법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신금융서비스의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금융기관의 취급이 허용되게 된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은행법」 및 「보험업법」상 금융상품·서비스 규정방식이 포괄주의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은행 및 보험 관련 신금융서비스에 있어서도 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

2.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의 허용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cross-border trade in financial services) 또는 ‘국경간금융서비스 공급’(cross-borde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은 i) 일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상대국의 영역내로의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ii)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대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을 말한다.⁴⁶⁾

한·미 FTA 협정에서 한미 양국은 내국인 대우와 합치하는 조건하에서 상대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공급자가 부속서 13-A에서 규정된 무역관련보험·재보험·보험컨설팅·보험부수서비스(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또는 금융정보 제공과 전달서비스, 은행 및 그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에 관한 금융데이터처리·금융관련소프트웨어 제공 및 전달, 은행 및 그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에 관한 자문 및 그밖의 부수서비스(중개를 제외)⁴⁷⁾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⁴⁸⁾ 또한 한미 양국은

44) 정순섭,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조와 내용”,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 BFL 총서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6, 351-352쪽.

45) 다만, 이 법 제3조 제1항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개념과 동조 제2항의 열거규정성, 제4조 내지 제5조의 증권과 파생상품의 정의 규정간의 관계에 관해서는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I, 박영사, 2009, 9-10쪽.

46) 한·미 FTA 협정문 제13.20조 제2항 제1문; 한·EU FTA 협정문 제7.4조 제3목.

47)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13-A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 서비스의 국경간거래에 대

협정문 제13.5조 제1항의 내국민대우의무의 목적상 타방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관련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자국의 금융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⁴⁹⁾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위치한 인과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자국 공민에 대하여 상대국의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⁵⁰⁾ 이 의무는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공급자가 자국의 영역내에서 사업을 행하거나 대행하는 것까지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⁵¹⁾

한·미 FTA 협정상 ‘국경간금융서비스 공급’이라는 용어의 정의에는

해서만 제13.5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보험서비스 및 보험관련서비스 중에서>

4. 가. 해상운송, 상업항공,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이는 당해 보험이 운송되는 물건, 물건 운송수단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경우여야 한다.) 및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컨설팅, 위험평가,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부수서비스, 그리고; 라.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서 정해진 중개 및 대리과 같이, 이 항의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한 위험에 대한 보험 중개(insurance intermediation) 서비스,

5. 컨설팅·보험계리·위험측정·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부수서비스.

<은행서비스 및 보험을 제외한 그밖의 금융서비스 중에서>

6. 가. 금융 정보 제공 및 이전; 나.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규정된 은행 및 그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데이터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 및 이전; 다. 중개를 제외한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규정된 은행 및 그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밖의 부수서비스. 이 약속은 한국에서 발행된 증권에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 사무관리,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에 대해서는, 한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2007년 3월 현재 한국내에서 발행된 채권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원화로만 표시된다. 한국의 영역외에서 발행된 채권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에 의하여 보유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는 한국의 영역내의 채권평가회사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 약속은 (i) 한국 기업의 신용평가, 또는 (ii) 한국의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대부 및 그밖의 금융거래 목적상의 신용조회 및 조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단 한국이 이들 서비스의 일부의 공급을 허용하면 향후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48) 한·미 FTA 협정문 제13.5조 제1항.

49) 한·미 FTA 협정문 제13.2조 제3항.

50) 한·미 FTA 협정문 제13.5조 제2항 제1문.

51) 한·미 FTA 협정문 제13.5조 제2항 제2문.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의 투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⁵²⁾ 따라서 예컨대 우리나라에 미국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공급자가 현지법인·지점 등을 설립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형식이 국경간거래를 허용하는 협정문 제13.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형식의 서비스 공급은 전술한 신금융서비스에 해당하거나 미국의 투자자인 경우 협정문 제13.2조 제1항에 의하여, 미국의 금융기관인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내국민대우 원칙의 적용에 의하여 각각 처리되게 된다.

국경간거래를 개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공급자가 국외에 존재하므로 소비자보호문제가 대두될 가능성, 단기적 자금이동 증가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정화 가능성, 그리고 금융기관등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비하여 금융서비스 노하우 이전효과 기대가 곤란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고, 따라서 “국경간거래에 대해서는 보수적,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전문가 또는 대형기관들간의 거래에 한해서 실용적 관점에서 허용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⁵³⁾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 FTA 협정에서는 일반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국경간거래 형태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대외 실물 무역거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수출입 적하보험과 같은 무역관련 보험서비스는 현재도 국경간거래가 사실상 허용되어 있는 것을 명확히 하고⁵⁴⁾ 본질적인 금융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수서비스의 국경간거래를 새로이 개방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미 양국은 협정문 제13.5조 제1항과 합치되는 한도에서 이 의무의 목적상 사업수행과 대행을 정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⁵⁵⁾ 그러므로 관련금융법률에 우리나라에 국경간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를 원하는 해외 금융기관이나 금융업자가 우리 금융감독기관의 허

52) 한·미 FTA 협정문 제13.20조 제2항 제2문.

53) 김자봉·하준경·이석호·구정환, 앞의 글, 7쪽.

54)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한미 FTA 금융협상결과 및 시사점”(이하 보도자료), (2007.4.10).

55) 한·미 FTA 협정문 제13.5조 제3항.

가를 받도록 규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미국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자의 국경간금융서비스에 관한 허가기준 및 절차를 관련법률에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에 있어서는 역내 금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가 요청된다. 그런데 국경간금융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서비스 제공국가(home country)와 이용국가(host country) 가운데 어느 쪽이 금융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주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서비스 제공국가는 당해 금융서비스제공자가 소재하는 국가이고 서비스 이용국가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로서 모두 당해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에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젤은행감독위원회나 국제보험감독협회와 같은 국제기관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공국가가 주된 감독자인 것으로서 이해한다고 한다.⁵⁶⁾ 그리고 이것은 국경간금융서비스 제공자가 제공국가에서 효과적인 건전성 규제감독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공국가와 이용국가의 금융당국의 상호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⁵⁷⁾ 우리나라 금융규제당국은 한미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위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이루어진 규제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미국 금융규제당국의 요청시에는 그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공 등의 절차를 구비하고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당국간 채널을 통하여 우리나라 금융규제당국은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에 참가하는 미국의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금융규제당국의 적절한 건전성 규제감독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협정에서는 일반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국경간거래 형태로

56)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Cross-Border Electronic Banking Activities (July 2003);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Principles on the Supervision of Insurance Activities on the Internet (October 2004).

57) 심영, 앞의 글, 68쪽.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에 있어서 서비스 이용자, 즉 소비자 보호의 문제에 있어서는 역내거래와는 달리 기업고객이 아닌 일반소비자의 보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고객의 경우에도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경간거래에 있어서는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통상 문제되는 바와 같이 비대면성, 원격성 등으로 인하여 거래시 중요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제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할 것과 서비스 공급자가 잠재적 이용자에 대하여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인적 사항, 금융서비스의 내용, 거래조건, 서비스 제공국가, 금융서비스영업허가의 내용, 분쟁해결의 방법과 절차 등의 중요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⁵⁸⁾ 여기에서 금융규제감독당국이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상 사업자의 등록제·인가제·신고제, 기업에 대한 주기적 보고의무, 행정당국의 조사권한의 법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기업의 재무상황, 수출입거래·기업구조조정·보험 등의 거래내역 등의 기업비밀이나 내부정부가 유출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서비스제공자의 이익충돌방지의무를 법정하고 그 위반시의 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규정과 입증책임의 소재 등도 법에 마련하고 인·허가의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 위반시의 제재기준을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규정내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한·EU FTA 협정에서는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허용과 같은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3.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처리 등의 허용

한·미 FTA 협정은 구체적 약속으로서 한미 양국은 상대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데이터처리가 금융기관의 통상의 업무과정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또는 그밖의 형식에 의한 정보의 자국의 영역 내외로의 이전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⁵⁹⁾ 이러한 금융

58) 심영, 앞의 글, 69쪽.

정보의 위탁·처리를 위한 이전은 “그밖의 형식에 의한 정보”보다는 대체로 전자적 형식의 정보로서 행해질 것이다. 부속서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약속을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⁶⁰⁾ 한·EU FTA 협정에서는 동 “협정의 발효 후 2년 이내에 각 당사국은 자신의 영역내에 설립된 타방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자료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신의 영역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시한 역시 협정 본문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⁶¹⁾ 이처럼 자료처리 허용에 관한 유예기간을 둔 것은 국내에서 운영 중인 미국이나 유럽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해외 본점 및 금융정보처리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게 허용은 하되, 그 경우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감독체계 정비를 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⁶²⁾

또한 한·미 FTA 협정에서 한미 양국은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실행가능한 정도만큼 (a) 계약체결확인 및 진술을 포함하는 거래 및 거래처리기능, (b) 데이터처리,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개발을 포함하는 기술관련기능, (c) 조달, 여행주선, 우편서비스, 물리적 보안, 사무소 공간관리 그리고 비서서비스를 포함하는 행정서비스, (d)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하는 인적자원 활동 등의 일정한 기능을 당사국의 영역 내 또는 외에 위치한 주사무소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⁶³⁾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를 허용하면 예컨대 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지점이 얻게된 고객의 금융정보를 미국의 본점 및 금융정보처리기관에 맡겨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경우 금융소비자인 우리

59) 한·미 FTA 부속서 13-B 제B조 1항.

60) 한·미 FTA 부속서 13-B 제B조 2항.

61) 한·EU FTA 협정문 제7.43조.

62)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보도자료. 한·EU FTA 협정문 제7.43조 나목은 개인 자료의 이전에 대하여 개인의 기본권의 보호 차원에서 사생활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호장치를 채택한다고 이러한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63) 한·미 FTA 부속서 13-B 제C조.

기업들의 대출정보 처리 등을 미국 금융회사의 본점에 맡기게 되면 미국 본점은 자연스럽게 우리 기업들의 재무상태를 유리알처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유출된 정보를 국내 기업고객에 대한 인수·합병 등에 전용할 가능성,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한 일반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⁶⁴⁾ 이 경우에는 전술한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허용시 우려되는 것보다 넓은 범위에서 정보의 유출이나 남용이 우려된다. 즉 금융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금융기관 자체는 물론 그 위탁 금융기관과 거래한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서비스제공자의 정보누설방지의무 및 이익상충방지의무를 법정하고 그 위반시의 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규정과 입증책임의 소재 등도 법에 마련하고 인·허가의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 위반시의 제재기준을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규정내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를 허용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인도 등에 거점 데이터센터가 있지만 국내법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왔던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데이터센터의 통합운영이 가능해지고 국내 금융기관들도 외국의 IT시설을 운영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국내 금융 IT기업에게는 미국이나 EU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들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정보처리시장에서 해외의 IT기업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대하여 IT기업들은 국내 금융 IT 시장이 대폭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금융 시스템의 공동화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하였다.⁶⁵⁾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금융법률에서 ① 개인정보보호, ② 위탁 받은 금융정보의 재판매를 포함한 재사용 금지, ③ 우리 금융감독당국의 해외수탁기관에 대한 검사권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④ 적정한 수준의 전산시설 유지 등을 위한 건전성 조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식·절차 등은 유예기간 중 미국제도 등에 대한 연구 등을

64) 한겨레신문, “정부 FTA 금융협상 대응방향 들여다보니” (2007.1.1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85213.html(2010.10.20. 마지막으로 방문).

65) 디지털데일리, “한-미FTA, 금융정보시스템 해외 이전 ‘사실상 확정’” (2007.4.2)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21721(2010.10.20. 마지막으로 방문).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⁶⁶⁾

4.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한·미 FTA 협정은 제13.11조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하였다.

한미 양국은 금융기관의 행위와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제와 정책이 외국 금융기관과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 촉진과 경영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점을 인식하며, 금융서비스의 규제적 투명성을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⁶⁷⁾ 양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모든 일반적 적용 수단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을 보장한다.⁶⁸⁾ 양국은 제21.1조 (공표) 제2항 내지 제4항에 대신하여,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a) 자국이 채택하려고 하는 이 장의 내용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규정과 당해 규정의 목적을 사전에 공표하고, (b) 이해관계인과 상대국에 대하여 그러한 채택하려고 하는 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c)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기에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한 중요한 의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응답하여야 한다.⁶⁹⁾ 양국은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일과 발효일 사이에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⁷⁰⁾ 양국은 자국의 자율규제기관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즉시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⁷¹⁾ 양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문의가 있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⁷²⁾ 양국의 규제당국은 금융서비스

66)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보도자료.

67) 한·미 FTA 협정문 제13.11조 제1항.

68) 한·미 FTA 협정문 제13.11조 제2항.

69) 한·미 FTA 협정문 제13.11조 제3항.

70) 한·미 FTA 협정문 제13.11조 제4항.

71) 한·미 FTA 협정문 제13.11조 제5항.

72) 한·미 FTA 협정문 제13.11조 제6항.

공급과 관련하여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제출서류를 포함한 요건을 공표하여야 한다.⁷³⁾ 양국의 규제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의 진행상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당국이 신청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당하게 늦지 않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⁷⁴⁾ 양국의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상대국 투자자,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공급자의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청문을 실시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된 때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규제당국은 12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늦지 않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기간내에 결정이 내려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⁷⁵⁾ 규제당국은 신청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신청인에게 신청을 거부한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⁷⁶⁾

또한 미국은 부속서에서 우리나라 금융감독위원회·감독원이 스스로 추진 중인 「금융회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 운영지침」 채택과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제도⁷⁷⁾의 도입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한국은 실행가능한 한, 금융기관이나 국경간금융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서면으로 행하는 기존의 관행을 지속하여야 하고, 관련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제공한 구술의 행정지도를 서면화하여 제공하고 그것을 공개된 인터넷사이트에 배포할 것, 그리고 기 행해진 행정지도의 심사과정에서 한국은 이해당사자에게 그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⁷⁸⁾ 이러한 것은 자국에

73) 한·미 FTA 협정문 제13.11조 제7항.

74) 한·미 FTA 협정문 제13.11조 제8항.

75) 한·미 FTA 협정문 제13.11조 제9항.

76) 한·미 FTA 협정문 제13.11조 제10항.

77) 이는 금융회사 등이 특정행위(신규영업, 신상품 개발 등)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해 줌으로써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발생가능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설명자료.

78) 한·미 FTA 부속서 13-B 제D조.

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권의 발동형식인 행정지도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과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위의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 노력에는 그 밖에도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시행세칙에서 감독규정으로 이관하는 것, 비계량 평가항목에서 주관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며 내부기준을 세칙으로 이관하는 것, 경영실태 평가시 금융회사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 적기시정조치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한·미 FTA 협정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13장의 어느 조항도 당사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나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의 재무사항 및 개별 고객의 계좌에 관련된 정보 또는 그 공시가 법집행을 저해하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 기업의 적법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비공개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특히 명시하고 있다.⁷⁹⁾ 이것은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이 우리나라나 미국 금융기관이나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 일정한 금융정책 달성에 불필요하거나 기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없도록 금융규제의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EU FTA 협정에서는 “양 당사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제 및 정책이 외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방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방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각 당사자는 금융서비스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⁸⁰⁾

V. 양 FTA의 영향에 대한 법적 대응방향

금융시장의 개방을 확대하는 경우 국내시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는 i) 재원조달 채널 다양화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감소, ii) 금융시장의 기능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iii) 선진 투자기법의 학습 및 합리적 가격 형성, iv) 국내기업의 경영 투명성, 재무건전성 강화에 기여하여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 v) 금융소비자의 만족도 개선, vi) 예금자 및 투자자의

79) 한·미 FTA 협정문 제13.7조.

80) 한·EU FTA 협정문 제7.39조.

위험분산 기회 제공에 따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 vii) 국내 규제감독의 선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금융개방을 확대하는 경우 국내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로는 i)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에 따른 금융안정성 저해, ii) 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함에 따라 금융시스템 위험의 전이 가능성 증대, iii) 서민금융 위축 등의 부작용 가능성, iv) 국제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성 투자자금의 유입에 대한 우려, v) 적대적 M&A를 통한 기업지배권의 장악 등이 거론된다.⁸¹⁾ 물론 이러한 것은 관련 금융시장이나 규제감독의 지배구조 등의 금융환경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할 때에 이론적으로 달성 가능한 기대효과들이고 실제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한·미 FTA협정은 일반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국경간거래 형태로 은행, 보험, 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긍정적 기대효과 가운데 i, ii, v, vi,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정적 기대효과 가운데 i, ii, iii, iv 등의 사항은 전혀 발현되지 않거나 적어도 그 발현되는 영역의 판도가 제한적일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한·미 FTA 또는 한·EU FTA 협정이 전자금융거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는 신금융서비스의 허용,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허용(EU는 제외), 금융자료의 해외위탁 처리의 허용,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등이 있는데, 각 관련분야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관해서는 후일의 연구에 미루고, 여기에서는 법적 대응방향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신금융서비스의 허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관련법률에서 당해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미 FTA에 의하여 허용될 예정인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와 관련해서는 관련법에서 허가주의를 취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외국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자의 국경간금융서비스에 관한 허가기준 및 절차를 관련법률에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81) 김자봉·하준경·이석호·구정환, 앞의 글, 10쪽.

나라 금융규제당국이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에 참가하는 미국의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금융규제당국의 적절한 건전성 규제감독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는 금융감독당국간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규정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에 있어서 제공자측에서 거래시 중요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처리 등의 허용과 관련해서는 이 경우 우려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장치, 정보처리 위탁기관이 위탁 받은 금융정보의 재판매를 포함한 재사용을 금지하고, 해외의 정보처리 위탁기관의 허가요건과 그에 대한 우리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권 인정, 금융기관의 최소한의 적절한 수준의 전산시설 유지 등의 허가요건과 그 구체적인 방식·절차를 법령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금융서비스의 규제에 있어서의 투명성의 촉진과 예측가능성의 증대는, 한·미 FTA 및 한·EU FTA 협정이 아니더라도, 아시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금융규제의 거버넌스의 선진화라는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글로벌 경제시대의 필수요건의 하나이므로 관련 법규정의 개선에 있어서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자유무역협정, 전자금융거래, 국경간 부수적 금융서비스거래, 신금융서비스, 정보의 국경간 이동

참 고 문 헌

- 김자봉·하준경·이석호·구정환,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한국금융연구원, 2007.2.
- 변제호·홍성기·김중훈·엄세용·김유석, 자본시장법, 지원출판사, 2009.
- 손진화, 상법강의 제2판, 신조사, 2010.
- _____, 전자금융거래법 제2판, 법문사, 2008.
- 이철승, 제7판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2008.
-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0.
- 정경영, 전자금융 거래와 법, 박영사, 2007.
- 정찬형, 제13판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0.
- 최준선, 제6판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0.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총람,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2004.3.
-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I, 박영사, 2009.
- 권재열, “주주총회의 전자화”, 「비교사법」 제10권 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 265-291쪽.
- 손진화,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의 도입방안”, 「상사법연구」 제22권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3, 73-120쪽.
- 심 영, “미국 FTA 금융서비스 분야 경향과 우리의 대응”, 「국제거래법연구」 제15집 제2호, 한국국제거래법학회, 2006, 47-72쪽.
- 정대익, “전자공시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22권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3, 225-278쪽.
- 정순섭,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조와 내용”,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 BFL 총서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6, 348-3372쪽.
- 정찬형,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상사법연구」 제22권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3, 11-72쪽.
- Bashar H. Malkawi, “E-Commerce in Light of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The WTO and the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gre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Information Technology* 15,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153-169.
- Won-Mog Choi, “Aggressive Regionalism in Korea-U.S. FTA: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s FTA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2,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595-615.

FTAs an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Kim, Doo-Jin*

Recently, Korea has completed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EU. Many scholars anticipate this will positively affect the approvals of the KORUS FTA by the Korea and US Congress.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outline of the KORUS FTA and the Korea-EU FTA in the light of the financial service. After analyzing the concept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 prospected the influence of the both FTAs especially in the realm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n Korea.

The KORUS FTA and the Korea-EU FTA declared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permit cross-border trade in auxiliary financial services, new financial services, and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financial institutions. And Korea would be expected to improve its regulatory transparency especially in financial service industry.

And I depicted some points that Korean government and legislature should take care of in preparing follow-up measures.

I argued that Korea needs to establish more effective regulatory and supervisory measures for the would-be-allowed cross-boarder financial services and the new financial services. Finally, I suggested that it will be necessary for Korea to improve its regulatory transparency and due process of law in order to pursue the goal of creating a financial hub in Korea.

Key Words : Free Trade Agreem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cross-border Trade in Auxiliary Financial Services, New Financial Services,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 Professor of Law,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h.D.